제25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2.9)

조례안 ·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 순 화]

목 차

1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거창군 거창 항노화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거창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	18
4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5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0
6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 ----------	33
7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6

의안번호 제2020 - 135호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12. 01.

나. 발 의 자 : 이재운 의원 대표발의

(이재운 · 김종두 · 최정환 · 심재수 · 권재경
김향란 · 표주숙 · 이홍희 · 신재화 · 박수자 · 권순모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 12. 01.

2. 제정이유

항노화 힐링랜드 등 거창군 관광지의 입장료 징수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 소액권 제작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거창사랑상품권 종이형 권면 금액 추가(안 제3조제2항)

1) 1,000원권

2) 2,000원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경제교통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12. 1. ~ 12. 7.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항노화 힐링랜드 등 거창군 관광지의 입장료 징수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 소액권 제작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을 통해 거창사랑상품권 소액권 제작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 2020. 7. 2.] [법률 제17252호, 2020. 5. 1., 제정]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의안번호 제2020 - 136호

거창군 거창 항노화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12. 01.

나. 발 의 자 : 권재경 의원 대표발의
(권재경 · 김종두 · 최정환 · 심재수 · 이재운
김향란 · 표주숙 · 이홍희 · 신재화 · 박수자 · 권순모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 12. 01.

2. 제정이유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입장료를 타 시군의 입장료 수준에서 적정하게 설정하고, 입장료 일부를 거창사랑상품권 또는 지역 특산물로 되돌려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입장료 변경(안 별표1)

구분	요금	적용
일반	3,000원	만 7세 이상 만 65세 미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미 징수한 입장료 중 일부 금액을 거창사랑상품권 또는 지역 특산물로 되돌려 줄 수 있다.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산림과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12. 1. ~ 12. 7.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입장료를 타 시군의 입장료 수준에서 적정하게 설정하고, 입장료 일부를 거창사랑상품권 또는 지역 특산물로 되돌려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에서는 해당 자연휴양림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등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면제에 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이미 징수한 입장료 중 일부 금액을 거창사랑상품권 또는 지역 특산물로 되돌려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2. 18] [법률 제17013호, 2020. 2.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문화·휴양"이라 함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총체적 생활양식과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
2. "자연휴양림"이라 함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산림욕장"(山林浴場)이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5.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숲길"이란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산림문화자산"이란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생태적·경관적·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큰 유형·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8. "숲속야영장"이란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8의2. "산림레포츠"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체험형 레저스포츠를 말한다.

9. "산림레포츠시설"이란 산림레포츠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 ①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32조에서 같다) 또는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의 지정 신청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신청의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자연휴양림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자연휴양림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토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으로 본다.

④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자연휴양림의 명칭·위치·지번·지목·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자연휴양림 지정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자연휴양림의 조성) ① 산림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국유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8. 2. 21.>

②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휴양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의6(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휴양림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18.>

1.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
2.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3. 그 밖에 자연휴양림등의 운영·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2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등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7., 2020. 2. 18.>

[시행일 : 2020. 8. 19.] 제22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산림휴양법 시행령)

[시행 2020. 8. 19.] [대통령령 제30947호, 2020. 8. 19., 일부개정]

제9조의7(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 6. 21., 2017. 12. 29., 2018. 8. 14., 2018. 12. 31., 2020. 6. 2.>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10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

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10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0의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14. 해당 자연휴양림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등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본조신설 2015. 12. 31.]

제10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① 법 제22조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로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 9. 17., 2012. 1. 6., 2014. 12. 3., 2017. 6. 27., 2017. 12. 29., 2020. 6. 2.>

1.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1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1의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림가, 임업후계자 또는 산림기술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단체

②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장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 9. 17.>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 4. 1.>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⑤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현행)

[시행일 : 2020.05.06., 조례 제257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양림 명칭은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이하 “힐링랜드”라 한다)라 한다.
② 힐링랜드의 위치는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산 19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시설 및 운영)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힐링랜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산림치유센터,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운영사무실, 편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힐링랜드 운영시간 및 휴관일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입장료 등 징수 및 할인) ① 힐링랜드의 입장료 및 체험료는 별표 1,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권 발행, 가족단위 방문자에 대한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장료 등의 징수, 할인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입장료 등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7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3.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등 시설사용자

6. 그 밖에 군수가 힐링랜드에 공익목적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설사용료 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 공익목적: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2. 영 제9조의7제2항제5호부터 제10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휴양관 또는 숲속의집 사용자, 공무수행자: 주차장 사용료

제6조(입장료 등 반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거창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된 경우(다만, 탐방 또는 시설사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일 이전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다만 사용일 그날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0퍼센트 반환한다.

부 칙(조례 제2572호 제정 2020.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1항의 입장료, 시설사용료(주차장 사용료는 제외한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입장료 및 체험료(제4조제1항 관련)**

1. 입장료

구분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1,000원	700원	300원
단체	700원	500원	200원

2. 체험료

구분	기준	요금
산림치유센터	30분	어른: 5,000원 청소년·어린이: 3,000원
산림치유프로그램	체험에 실제 필요한 비용	

〔별표 2〕 **시설사용료(제4조제1항 관련)**

<table>
<tr><th rowspan="2">시설명</th><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사용
기준</th><th colspan="2">사용료</th></tr>
<tr><th>성수기</th><th>비수기</th></tr>
<tr><td rowspan="4">주차장</td><td rowspan="2">승용차, 승차인원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td><td>30분</td><td colspan="2">500원
(10분 초과당 200원)</td></tr>
<tr><td>1일</td><td colspan="2">5,000원</td></tr>
<tr><td rowspan="2">승차인원 16인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차</td><td>30분</td><td colspan="2">1,000원
(10분 초과당 400원)</td></tr>
<tr><td>1일</td><td colspan="2">10,000원</td></tr>
<tr><td rowspan="3">산림휴양관</td><td>36제곱미터
(2인~4인)</td><td rowspan="3">1일</td><td>100,000원</td><td>70,000원</td></tr>
<tr><td>52제곱미터
(6인~8인)</td><td>140,000원</td><td>90,000원</td></tr>
<tr><td>80제곱미터(10인)</td><td>180,000원</td><td>150,000원</td></tr>
<tr><td rowspan="2">숲속의 집</td><td>38제곱미터(2인~4인)</td><td rowspan="2">1일</td><td>100,000원</td><td>70,000원</td></tr>
<tr><td>52제곱미터(6인~8인)</td><td>140,000원</td><td>90,000원</td></tr>
<tr><td>셔틀버스</td><td colspan="4">힐링랜드 시설사용자: 무료</td></tr>
</table>

비고: 1회 주차 시 누적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경우 1일 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시행규칙(현행)

[시행일 : 2020.05.06., 규칙 제128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장시간 등) ①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이하 "힐링랜드"라 한다) 일일 입장 및 입실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계절·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입장 및 입실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힐링랜드 입장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2.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 그날 15시부터 다음 날 12시까지
3. 주차장: 그날 13시부터 다음 날 12시까지

② 성수기와 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성수기: 7월·8월, 금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전날
2.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제3조(입장료 등 세부기준) ① 조례 별표 1에 따른 입장료 및 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1.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신분증(휴가증 포함)을 소지하거나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군 대체복무자, 의무소방원과 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5. "단체"란 15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할인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행할 수 있다.

1. 국내외 사정으로 위축된 경기회복이 필요할 경우
2. 거창군 축제 등으로 관광 및 소비 촉진이 필요할 경우
3. 힐링랜드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③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가족단위 방문자"란 18세 이하의 아동과 보호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를 말한다)가 함께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휴관일)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힐링랜드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2. 임시 휴관일: 군수가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힐링랜드 게시판 및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입장료 판매 등) ① 힐링랜드 입장료, 시설사용료, 체험료의 징수는 매표소에서 판매하고, 시설사용권은 예약할 수 있다.
② 시설사용권의 예약은 결제를 한 시점부터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이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시설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목적) 조례 제5조에서 “공익목적”이란 산림문화·휴양의 진흥과 힐링랜드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 칙(규칙 제1289호 제정 2020.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제2020 - 134호

거창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11. 24.

나. 발 의 자 : 이재운 의원 대표발의

(이재운 · 김종두 · 최정환 · 심재수 · 권재경
김향란 · 표주숙 · 이홍희 · 신재화 · 박수자 · 권순모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 12. 01.

2. 제정이유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책무(안 제3조)

1) 군수는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2) 마을대표는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

다. 지원대상(안 제4조)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중 마을당 농업인 20명 이상

참여하는 마을

라. 지원기간(안 제5조)

1) 상반기(4월~6월), 하반기(9월~11월) 기간 중 시행

2)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지원기간 변경 가능

마. 지원범위(안 제6조)

조리인력 인건비, 식재료 구입비, 가스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바. 사업신청 및 지원결정(안 제7조 ~ 안 제8조)

사. 완료보고 및 지도감독(안 제9조 ~ 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농업기술센터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11. 25. ~ 11. 3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을 통해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 6. 생략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시행 2020. 2. 11.] [법률 제16973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5. 6. 22.>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390호, 2020. 6. 9.,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의안번호 제2020 - 126호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11. 27.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0. 12. 01.

2. 제정이유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민간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다양한 활동 조직들이 참여하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 입안원칙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정비(조례 전반)

나. 마을만들기 업무의 위탁근거 마련(안 제20조)

1) 현행) 지원센터 위탁

2) 신설) 마을만들기 업무 위탁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제104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0백만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10. 30.~11. 19.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11조제1항)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민간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다양한 활동조직들이 참여하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을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민간 위탁근거 마련과 지역의 다양한 활동조직들이 참여하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

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증·개

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무편람을 작성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0. 8] [대통령령 제31047호, 2020. 9. 2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390호, 2020. 6. 9,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84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안번호 제2020 - 131호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11. 27.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0. 12. 01.

2. 제안이유

농림축산식품부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의 활동조직에서 추진하는 S/W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추진단 사무국을 사업지침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탁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신활력플러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4년간)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35번지 일원(10,959㎡)

○ 총사업비 : 7,000백만원(국비 4,900 / 도비 630 / 군비 1,470)

※ 부지매입비 1,500백만원(군비) 별도 편성/부지매입 완료('20.6.)

○ 사업내용(사업지침 상 S/W사업비 30%이상 편성 필수)

- H/W사업(4,900백만원) : 공유가공공장, 공유부엌,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 S/W사업(2,100백만원) : 신활력아카데미, 로컬푸드육성, 로컬여행활성화 등

○ 추진체계

- 추진위원회 : 추진단장 선임, 사업계획 승인, 사업비 투자결정, 감사
- 추 진 단 : 사무국운영, S/W사업 추진, 활동조직 발굴 및 지원
- 활 동 조 직 : S/W사업 참여, 시설활용 및 운영활성화
- 행 정 : 사업총괄, H/W사업 추진

나. 위탁사무

사무명	주 요 내 용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국 운영	- 신활력아카데미 운영(활동조직 발굴·육성) - 신활력공모사업 추진(로컬푸드육성, 로컬여행활성화 등) - 사업비(잠정) : 2,100백만원(S/W사업)

다. 사무국 구성(안)

○ 명 칭 : 거창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국

○ 형 태 : 비영리민간단체

○ 운영기간 : 2021년 ~ 2023년(S/W사업 완료시까지 탄력적 운영)

○ 구 성 원 : 비상근 1명(추진단장), 상근 3명(사무국장 1, 사무원 2)

※ 신활력추진위원회에서 추진단장 선임 및 상근직원 공개채용

○ 소요예산(연간)

계	인 건 비(사업가이드라인)	운 영 비
120,000 (군비)	102,600 - 사무국장 3,000/월 - 사무원 2,100/월 - 4대보험 등 1,350/월	17,400 - 사무집기 임대·구입 - 사무용품 구입 - 전기·통신 요금 등

※ 추진단장 활동비는 신활력 사업비(국비)에서 월 200만원 이내 지급가능

4. 관계법령

○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제20조

제20조(위탁 운영) 군수는 지원센터 및 마을만들기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추진할 능력이 있는 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국(지역의 활동조직에서 추진하는 S/W사업 지원 역할 수행)을 사업지침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탁 운영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에 따르면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자치사무인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국 운영 업무는 전문지식과 능률성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됨.

○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국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의안번호 제2020 - 129호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11. 27.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0. 12. 01.

2. 제안이유

가. 가조119안전센터 청사는 가조면 마상리 467-6번지 거창군 소유 토지에 위치한 경상남도 소유 건물로 청사 노후 및 소방인력 증가 등으로 협소한 청사 공간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상 2층의 건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무상사용 요청한 것으로

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청사증축을 통해 소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가조119안전센터 현황

○ 청사현황

- 토지(소유 : 거창군) : 가조면 마상리 467-6, 대지, 1,026㎡
- 건물(소유 : 경남도) : 철근콘크리트조, 2층, 연면적 408.95㎡

○ 운영현황

- 관할지역 : 3개면(가조면, 가북면, 남하면)
- 면　　적 : 212㎢(거창군 전체의 26.4%)

○ 그간 추진내역

- 2005년 지역대 정원규모로 신축
- 2010년 안전센터 승격 후 공간 협소로 2013년 1층과 2층 증축
- 2016년 행정 수요의 증가로 물탱크 차량 공간과 적재공간 증축
- 2020년 청사 노후 및 소방인력 증가 등으로 증축 협의 요청

나. 증축계획

○ 증축규모 : 266.8㎡ / 지상 2층(1동) / 철근콘크리트조

○ 사 업 비 : 1,061,726천원

4. 참고사항

가. 추진일정

○ 거창군 협의 및 거창군 의회 동의 : '20. 12월

○ 무상사용 협의 통보 : '20. 12월

○ 공사착공 및 준공 : '21. 3월 ~ 9월

나.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 :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조 : 영구시설물 축조 조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 사용료의 감면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청사 노후 및 소방인력 증가 등으로 협소해진 가조119

안전센터 청사 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소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가조119 안전센터 증축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 동의함에 따른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의안번호 제2020 - 130호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11. 27.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0. 12. 01.

2. 제안이유

거창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0년 12월말에 종료됨에 따라,「폐기물관리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시설을 전문적인 기술능력을 보유한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시 설 명 :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139-7

다. 시설현황

시설용량	처리방법	위탁기간	연면적	운영업체	비고
30톤/일	열분해 가스화방식	2018. 1. 1.~ 2020.12.31.(3년)	1,855㎡ (3층,철골)	〈공동수급〉 환경시설관리(주), 화성종합건설(주)	관리인력 18명

라. 위탁대상 사무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 소각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업무(24시간 운영)

○ 소각시설 내외의 환경정비, 환경오염물질 기준이내 배출

○ 소각시설 내외 전기설비 및 급배수 설비관련 업무

○ 안전관리 및 내구연수 증대 방안 도출

마. 위탁기간 : 2021. 1. ~ 2023. 12. 31.(3년)

※ 기존 위탁기간 : 2018. 1. 1. ~ 2020. 12. 31.(3년)

바. 계약갱신 근거 및 검토결과

○ 거창군 환경기초시설(소각장포함)운영 관리대행 사업 협약서 제4조(관리대행기간 및 협약 변경)

- 대행성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 가능

○ 현 수탁업체를 갱신하여 운영할 경우 그간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토대로 원활한 운영이 가능함.

- 관리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위기 대처 가능
-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32개항목) 준수 등 법적 관리 대응 능력이 유리함.
- 지속적인 시설물 개선과 관리가 용이함.
- 시설운영관리 전반에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함.

사. 위탁업체 선정 : 기존 수탁업체(공동수급)와의 '계약갱신'

아. 소요예산 : 1,796백만원 정도/년

자. 향후계획

- 2020. 12. : 민간위탁 군의회 동의
- 2021. 1. : 시설운영

4.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62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거창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을 전문적인 기술능력을 보유한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에 따르면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자치사무인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운영은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에 해당됨.

○ 따라서 효율적이고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 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